

*** 교재 13페이지 아래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2) 공탁관의 보조자로서의 공탁물보관자

-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대법원장은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488조 제2항).
- ③ 물품을 공탁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장에 의하여 지정된 공탁물보관자가 그러한 종류의 물품 보관을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여 목적물의 보관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공탁자는 민법 제488조 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아 공탁할 수 있다.

나. 법원선정 공탁물보관자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공탁물보관자도 통상의 경우와 같이 공탁관의 단순한 이행보조자일 뿐이고 별도의 독립된 공탁기관은 아니므로, 결국 민법 제488조 제2항은 특수한 경우의 공탁물보관자를 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공탁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관할 공탁관의 권한에 속한다.



▶ 위 부분 전체를 아래와 같이 수정

2) 공탁물보관자

- ① 공탁절차의 주재자로서의 공탁사무처리기능과 공탁물보관자로서의 공탁물 보관·관리기능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관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공탁물을 보관만하는 단순한 물리적 보관 자로서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다.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대법원장은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488조 제2항).
- ③ 물품을 공탁하려고 하는데 대법원장에 의하여 지정된 공탁물보관자가 그러한 종류의 물품 보관을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여 목적물의 보관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공탁자는 민법 제488조 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아 공탁할 수 있다.

*** 교재 15페이지 아래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② 한편 공탁법(개정 2020.12.8, 시행 2022.12.9.)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1항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피고인(피의자 아님)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위 부분에 아래내용 추가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공탁은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교재 17 페이지 아래부분 삭제

② 자기의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하는 자를 공탁자라 하고, 공탁자에 의해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자

③ 공탁자는 공탁할 때 공탁금과 함께 공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경우에는 이 경우의 공탁금에 갈음하여 공탁당사자가 공탁할 때에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다가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보관공탁이나 가압류해방공탁 등과 같이 그 성질상 피공탁자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④ 한편 공탁규칙 등에는 공탁당사자와는 별개로 '이해관계인'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누가 이해관계인인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 공탁자는 본인이고, 제3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공탁자이며,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등이 재산관리의 일환으로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공탁자이다.

아래 부분 삭제

↓

관련/판례

우리 공탁제도는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며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채무자가 지정해 준 채권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 교재 17 페이지 맨아래부분에 다음 공탁선례 추가

□ **관련선례** : 해산간주된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는 공탁서상의 기재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표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공탁신청시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법인의 명칭과 주사무소만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다(공탁선례 2-18).

2) 담보공탁 (1) 공탁자 ① 재판상 담보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탁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는 담보제공을 당사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제3자가 이를 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없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반드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만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 역시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대결 2019. 12. 13. 2019그695). 따라서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그 소유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자기 명의로 공탁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업보증공탁은 근거법령에 공탁자가 정해져 있는바, 영업자의 신용력 확인이라는 목적이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납세담보공탁은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유예, 연부연납 등의 허가를 구하려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가 공탁자가 될 것이다.	CHAPTER 01 서설 19
---	-------------------------

이 부분에 아래 내용들 추가

□ **관련판례**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반드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만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 역시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대결 2019. 12. 13. 2019그695).

또한, 영업보증공탁은 공탁신청 당시에는 누가 공탁자와의 영업거래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채권자(담보권리자)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미확정이며, 따라서 다른 공탁의 경우와 달리 영업보증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을 두지 않는다.

*** 22 페이지 아래 주석부분 삭제



- 1) 전자증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유가증권(코스닥상장 유가증권 포함)인 경우 그 유가증권 대신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예탁증명서를 공탁할 수 있었다.

22 PART 01 총론

*** 27 페이지

아래표시 부분 수정

- ① 금전공탁 신청사건
- ② 공탁액이 금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 ③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청구
- ④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한 사실증명청구
- ⑤ 전자신청에 대하여 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법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 ⑥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

② 5천만 원 이하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회수청구..... 로 수정

*** 31 페이지

아래표시 부분 수정

- 1) 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① 공탁서의 “공탁자”란에는 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본점(주사무소)·법인등록번호를 적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적어야 하고, 외국인일 경우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재외국민일 경우는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행정예규 제1083호 제2조).
 - ② 제3자가 공탁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공탁자이므로 제3자를 기준으로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하는데, 이 경우 변제공탁은 공탁원인사실란에, 재판상 담보공탁은 비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각각 적어야 한다. 타인의 재산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도 재산관리인이 공탁자이므로 그 재산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 2) 공탁물 표시

사업자등록번호..... 로 수정

아래 부분에 아래내용 추가

3) 공탁수리 후의 발견 공탁서 기재의 착오가 공탁수리 후에 발견된 것이어야 한다. 공탁수리 전에 발견된 오류는 공탁규칙 제12조에 따라 기재문자를 정정하는 방식을 취하면 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공탁서 정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4) 공탁의 동일성 유지 ① 일단 성립한 공탁의 법률관계는 공탁서 기재사항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파생되므로 후에 공탁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함부로 그 정정을 허용하여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에는 공탁당사자의 실제적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공탁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② 예컨대 특정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甲과 乙 간에 다툼이 있지만 채무자가 甲을 피공탁자로 하	

□ 관련선례 :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1. 공탁서 정정이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가 있음을 공탁수리 후에 발견한 경우에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것을 말하는데, 공탁서 정정에 관한 공탁규칙 제30조에는 정정신청의 종기에관한 규정이 없고, 특히 토지수용절차에서는 공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위해서 공탁서의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를 정정할 실익이 있으므로, 공탁자는 공탁금이 지급된 후에도 공탁서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그런데 공탁서의 정정은 이미 성립한 공탁의 법률관계에 따른 공탁의 법적안정성과 공탁당사자의 실제적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탁서및 첨부서면 전체취지로 보아 공탁서에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을 때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만일 공탁소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기록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탁관은 정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공탁원장 등을 참작하여 정정신청의 수리 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202303-1).

아래내용만 남겨두고 모두 삭제

(5)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정정신청

- ①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토지보상법에서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허용된다. 즉, 사업시행자는 그 공탁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함에도 사업시행자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적 조치로써 편의상 방편일 뿐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공탁으로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지만, 이로써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
- ② 따라서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공탁자(사업시행자)가 이러한 공탁서 정정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7.10.16, 96다11747 참조).



아래내용으로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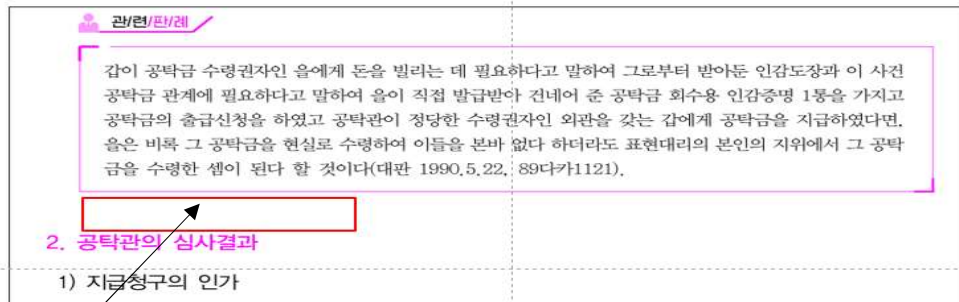
(5) 절대적불확지공탁에서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정정신청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관련판례** :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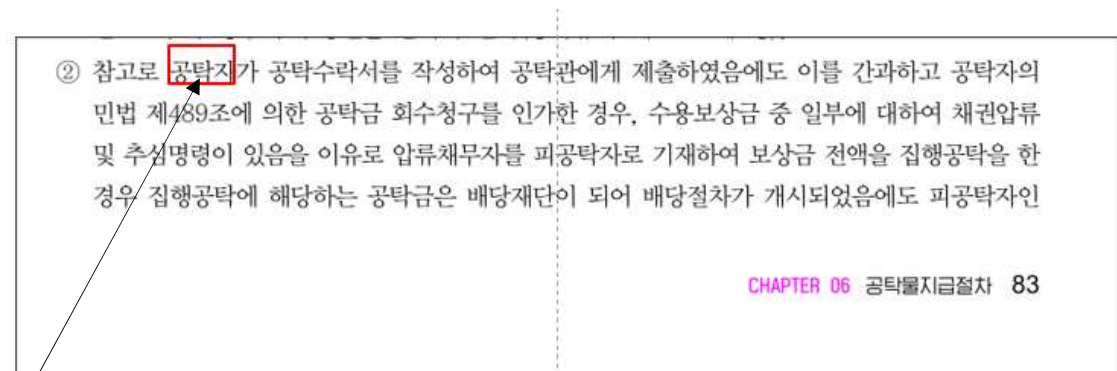
*** 83 페이지 수정



이 부분에 공탁선례 추가

□ **관련선례** : 사용자인 법인이 민소 579조 4호(민집 246조 1항 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민법 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집행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비록 그 방식이 적법하더라도 그 내용은 무효라 할 것이 나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공탁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금 출금을 청구하는 어느 경우라도 그 출금을 인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얻어 이를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 2-89).

*** 83 페이지 수정



피공탁자..... 로 수정

아래 부분에 아내내용 등기선례 추가

처분권자 자신에게 귀속한다고 다투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신허공탁을 하되, 위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 중이거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있다는 사정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 불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 밖의 경우

- ④ 공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총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보상금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에는 다투는 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121호).
- ⑤ 2014. 5. 28 개정된 금융신탁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에 의하며 신의이화

□ **관련선례** : 채권양도가 이뤄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절차

1.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이뤄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로 하고, 피공탁자는 '양수인(가처분채무자)'으로 하되, 위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2. 한편 위 1.과 같이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면, 그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제3채무자는 위 1.과 같은 방식으로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2024. 6. 10. 사법등기심의관 - 3002 질의회답)

*** 131 페이지 아래 부분 삭제

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1.11.10, 2011다55405).

2. 변제공탁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기재되므로, 실제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2016.3.24, 2014다3122·3139).

⑥ 예고등기를 이유로 '소제기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등기말소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승소확정판결을 얻었다면 그 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에 해당되고 이와 별도로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등은 필요 없다(공탁선례 제2-92호).

⑦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의 본안판결을 받았거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토

*** 133 페이지 아래부분에 아래내용의 선례추가

⑥ 그러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할 질권, 저당권, 전세권의 표시는 반대급부 조건이 아니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이의유보부 출급(이의유보 의사표시) (1) 의의 ① 공탁물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 시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이와 같이 공탁원인에 대하여 이의유보	
--	--

□ **관련선례** :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하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1.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 및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내용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한 것은 유효한 공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인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공탁자의 서면(공탁자 작성의 건물인도확인서, 반대급부채권 포기·면제서 등),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공탁자의 강제집행신청으로 건물의 인도 사실이 기재된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등) 등이 해당한다(공탁법 제10조).
3. 이외에도, 관리비 정산내역서, 피공탁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통·반장의 인도(불거주) 확인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인도(불거주) 확인서, 이사 확인서, 공실인 인도 대상 목적물(호실)과 촬영 날짜가 표시된 현장사진, 공탁자에게 퇴거사실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린 문자메시지 또는 내용증명우편, 현관문 열쇠를 물품 공탁한 물품 공탁서 등을 제출하여 반대급부인 건물의 인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첨부된 서면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는 해당 공탁관이 판단할 사항이다.(2024. 7. 12. 사법등기심의관-1698 질의회답)

*** 133 페이지 맨 아래에 다음내용 공탁선례 추가

□ 관련선례 :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었음을 원인으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이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므로, 공탁원인사실에 다툼이 있는 채무자(피공탁자)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이 집행공탁을 한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공탁금 전액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지위에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한편 금전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으로 인하여 채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탁원인사실에 다툼이 있는 채무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202307-1).

*** 144페이지 다음에 아래내용 추가

07 절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

- 개정 2024. 1. 23. [행정예규 제1362호, 시행 2024. 1. 2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탁신청

제2조 (군사법원 사건의 공탁)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공탁은 별표 2 기재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제3조 (법령조항의 기재)

공탁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한다.

제4조 (피공탁자 성명의 기재)

공탁자는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이라 한다)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하여 가명 표시한다.

제5조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① 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0시 00구 00로 0길 0, 00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제6조 (공탁원인서면)

규칙 제83조제3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말한다.

1.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공소장,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 등)
2. 그 밖의 규칙 제83조제3호에 해당함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제7조 (피공탁자 성명의 비실명 처리)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아래 각 호의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하여 입력한다.

1.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성만 입력하고 이름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2.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 중 일부가 기호처리 방식(○, □, △, ◇ 등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된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입력한다.
3. 공탁서에 피공탁자 성명 대신 가명이 기재된 경우에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하여 입력한다.

제3장 형사공탁 공고 등

제8조 (형사공탁 공고)

- ① 공탁관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다만, 피공탁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지 않거나 가명이 아닌 경우에는 성(성)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한다.
 5.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의 성(성)이 별표 3 기재 이외의 성(성)일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

- ①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규칙 제85조제1항의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1.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공탁물, 공탁 연월일
 2.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3. 규칙 제83조제2호 서면의 명칭
 4. 문서확인번호(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사실통지서의 문서확인번호란에 피공탁자별로 자

동 채번되어 기록되는 16자리의 숫자 또는 숫자와 알파벳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원본은 해당 형사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④ 재판장은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⑤ 제4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제10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담당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 사무는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 이하 "형사본안사건"이라 한다) 담당재판부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발급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11조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

①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양식의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관에게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증명서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형사본안사건: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2. 공탁사건정보: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3.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4.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

② 제1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3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하고 해당 형사사건이 상소되어 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이 검찰에 인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

① 규칙 제86조제3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를 공판검사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② 공판검사로부터 피공탁자 정보 회신서가 제출된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1조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

제13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①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86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되어 조서 등을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3.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5장 지급절차 등

제14조 (동일인 증명서 접수)

동일인 증명서를 송부받은 공탁관은 그 서면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수령일자 및 발급기관을 해당 기록표지에 기재한 다음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제15조 (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

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가 접수된 때 그 서면의 기재사항을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에 전산등록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②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 외에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때 제7조에 따라 입력된 피공탁자 성명을 불러오기 방식으로 전산등록 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전산등록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와 공탁서 등 공탁기록을 대조하여야 하고, 특히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기재 문서확인번호와 동일인 증명서 기재 문서확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된 경우 공탁관은 제1항의 방법 및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위·변조방지바코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제6장 열람·복사절차

제17조 (비실명 처리의 범위)

규칙 제87조에 따라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 그 포괄승계인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주소 등 연락처(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제18조 (열람·복사 제공의 방식)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제17조 기재 비실명처리대상 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 복사한 사본 또는 비실명처리 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열람·복사의 청구에 제공한다.

제19조 (사실증명 제공의 방식)

공탁관은 공탁관계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에 대하여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 * 등’ 처리)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다.

제7장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절차

제20조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 ①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이하 "회수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공탁관은 출석한 피공탁자에 대하여 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말한다)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우편으로 회수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신분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회수동의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
 2. 회수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부 칙 (2024.01.23.제136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 ① 이 예규는 그 시행 전에 접수되어 시행 당시까지 공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공탁관은 제16조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여백에 별표 4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및 검찰에 다시 송부한다.

□ 관련선례 : 공탁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1.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에 그 피해자

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 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피공탁 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공소장 등에 피해자들의 성명이 실명 또는 가명[예시: 홍길동(가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피해자에 대한 공탁원인사실(피해 발생시점, 피해장소,채무 의 성질)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 할 수 있다.

3. 이와 달리 ① 각 피해자들의 성명이 실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탁원인사실(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이 다른 경우, ② 피해 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공탁서 기재에 의하여 피공탁자 특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각 1건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2024. 6. 13. 사법등기심의관 - 3074 직권선례)

*** 형사공탁 관련 묻고 답하기 ***

1. 제도안내

Q1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 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에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이 형사공탁특례 제도의 목적입니다.

Q2 형사공탁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법원”이라 합니다) 소재지 공탁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 통지를,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형사공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때에 필요한 '동일인 증명서'는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하여 관할 공탁소에 송부합니다.

○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상세 내용
토지관할(제1항)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공탁자(제1항)	형사 피고인으로 한정
공탁원인(제1항)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 기재(제2항)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을 기재
공탁원인사실 기재(제2항)	피해발생시점,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
공탁통지 방식(제3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같음
공탁물 수령 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서면(제4항)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함

Q3 형사공탁이 기존 형사변제공탁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 형사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으로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하고,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 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 하여야 합니다.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 특례)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하고, 피공탁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적용법령 등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의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형사변제공탁과 형사공탁의 차이점 개괄]

구 분	형사변제공탁	형사공탁
피공탁자 기재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성·가명), 형사사건번호
공탁통지 방법	피공탁자 주소지에 배달증명	인터넷 공고
형사공탁사실 통지	-	공탁관 ⇨ 법원 및 검찰
동일인 증명서 발급	-	법원 또는 검찰 ⇨ 공탁소
출급청구 시 첨부서류	공탁통지서,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Q4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민사재판 등으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 할 수 없나요 ?

-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탁금액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출급청구서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

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이의유보하고 출급함”).

○ 위와 같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적용대상

Q5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Q6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공탁은 공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채무소멸 등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 행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 지정의무를 부담합니다(대판 1997. 10. 16. 96다11747 등 참조).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형사공탁의 경우도 공탁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참조).

○ 공소장 등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경우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고, 관련 형사사건번호와 피해발생사실 등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게 되면 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 받은 법원 또는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가 형사공탁특례의 주된 도입 취지인데, “성명불상자”의 경우 형사공탁특례의 도입 취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형사공탁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Q7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있나요?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가 형사공탁 특례의 주된 도입 취지라는 점, 주식회사 등 법인이 피해자인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공탁의 요건인 “법령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주식회사 등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형사공탁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주식회사에 대한 합의금 등의 공탁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절차에 의할 수 있습니다.

Q8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어떻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나요?

○ 형사공탁이 성립할 당시에는 피공탁자가 생존해 있었지만, 그 후 사망한 경우에도 공탁소에서 공탁 사실통지서를 송부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동일인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

하게 되므로 피공탁자의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상속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9 강도살인죄 등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탁 신청시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강도살인죄 등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은 피해자 사망시점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유족으로서 고유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형사공탁 위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유족과의 합의를 위하여 유족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려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2차 가해가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공탁을 인정할 실익이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 대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의 열람을 신청하였지만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이 불허되어 피해자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공탁자 성명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 명칭을 기재하되, 괄호로 “사망” 사실을 기재합니다. 형사공탁절차상 불가피하게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 란에 기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 대한 공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가령, 공소장 등에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가 “홍00”으로 기재된 경우 피공탁자 성명란에 “홍00(사망)”과 같이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 란에는 “사망한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이 불허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공탁한다.”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공탁원인을 기재합니다.

○ 상속인은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10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형사공탁의 경우 대상범죄를 소송절차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배상명령의 대상범죄로 제한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공탁법 제5조의2에서 그 대상채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 심사권만 갖는 공탁관의 심사범위를 고려할 때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해당범죄의 부수적 보호법익 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합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과 현재 실무상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 조 형사변제공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양형위원 회 홈페이지 (<https://sc.scourt.go.kr>) - “양형기준” 참조).

***** 공탁신청절차**

Q11 형사공탁 신청 절차와 그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형사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소를 방문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합니다.
- 공탁서에는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 법령조항을 기재합니다.
- 첨부서면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탁관은 형사공탁 특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의 적식을 갖춘 신청인지 여부 등을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 공탁관의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인 경우 공탁신청을 수리하여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내주고, 공탁자는 공탁금을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하게 되고 (가상계좌에 의한 납입 가능) 공탁자가 공탁금을 보관은행에 납입한 때 공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형사공탁 사실을 전자공탁홈페이지, 대법원홈페이지에 형사공탁 사실을 공고 하고 법원과 검찰청에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Q12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조회 화면을 출력한 서면” 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Q1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 해자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 공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법 제488조에 따라 채무이행지인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도 공탁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형사공탁 특례의 요건이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점과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해당하는지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소명서면이 첨부된 경우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 에 대한 형사공탁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14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이 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공탁소에서 출급이 가능한가요?

- 금전변제공탁신청이나 금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 관할 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 공탁신청이나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할공탁소 이 외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행정예규 제1167호).
- 사례의 경우 관할공탁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 접수공탁소가 부산지방법원 공탁소가 됩니다. 그런데 관할공탁소와 접수공탁소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내 소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관할 외 공탁소에 공탁신청, 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원격지 공탁소를 이용하여 공탁금 출금청구를 하는 경우 동일인 증명서가 관할 공탁소에 송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격지 공탁소를 방문하시기 전에 관할 공탁소 또는 발급기관(법원·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송부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방식 개괄]

형사공탁 특례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원격지 신청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
공탁신청	○	○	○
지급신청	○	×	○
공탁서 정정신청	○	×	×
열람·사실증명 신청	○	×	×

Q15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 공탁신청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출금청구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향후 전자공탁시 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출금청구도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Q16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할 수 있나요?

○ 실제법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를 변제공탁 할 경우 공탁자는 공탁서 의 반대급부의 내용 란에 피공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의 내용을 기재 할 수 있고,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이 양형에 참작 받을 목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형사공탁을 한 경우 형사공탁 한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사항이 라는 점에서 실제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탁서에 반대급 부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Q17 공탁서에 어떤 법령조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탁 근거법령의 조항을 적어야 하고, 다른 종류의 공탁과 구별하여 공탁관이 심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하면 됩니다. 형사공탁서 법령조항 란에 “공탁법 제5조의2”가 부동문자로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공탁자가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소에서 전산시 스템 입력 시 공탁근거 법령조항 란은 공탁법 제5조의2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Q18 공탁서상 피공탁자 성명 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 피공탁자의 성명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기호 등)이나 가명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된 경우는 괄호 하여 가명임을 표시합니다.

○ 따라서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

면 되고, 일부가 비실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례: 홍길동, 홍길, 홍□동, 성춘향(가명)

○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공소장을, 진술서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진술서를 첨부서류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탁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도 하지 않는데(공탁규칙 제82조),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공 탁 번 호		년 금 계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법 제5조의2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피 공 탁 자	성 명	1. 홍길동 2. 홍길○ 3. 홍□동 4. 성춘향(가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전화번호				

Q19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알고 있는 경우 공탁서에 실명을 기재해야 하나요?

○ 피고인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홍길동)을 알고 있더라도 공소장 등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홍길)인 "홍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Q20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한 경우 외부에 피해자 실명이 공개되나요?

○ 공소장에 피해자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을 첨부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피해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산입력 시 피해자 성명은 비실명처리가 되어 열람이나 사실증명은 피공탁자 성명을 비실명 처리한 후 제공하게 됩니다.

○ 형사공탁공고시에도 피공탁자 성명은 전산입력 된 형태로 비실명 처리되어 제공됩니다.

○ 단,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보내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에는 피공탁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에 피공탁자 성명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법원,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1 공탁서상 공탁원인사실 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공탁원인사실이란 공탁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해당 공탁 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의미하는데, 주로 채권발생원인, 채무액, 이행기, 이행지, 특약유무 등을 공탁원인사실 란에 기재하게 됩니다.

○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및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등 참조).

○ 특히 형사공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Q22 법원·검찰에 대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 람·복사가 불허가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 우 공탁원인사실 기재 방법은?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된 사정을 공탁원인사실 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또한 공탁관이 공탁신청서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서면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가된 재판기록 또는 수사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23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형사공탁을 하려는 경우 공탁원인 사실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자	성명 (상호, 별칭)		피공탁자	성명	1.홍길동 2.홍길○ 3.홍□동 4.성준하(가명)		
	주민등록번호 (일인등록번호)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주소 (본점, 주사무소)			경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전화번호						
공탁금액		한글	모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0000. 0. 0. 00:00정 0시 00분 00초 0진 0, 00의달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러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란 공탁함					

-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와 같이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기재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법 령 명칭만 기재해도 됩니다.

Q24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 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나요?

- 형사공탁의 대상 범죄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여 불허가 된 경우 그 사정을 소명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불허하는 재판장 등의 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Q25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형사공탁의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가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를 금지하고 있는데, 형사공탁의 형사사건 공소장에 대상 범죄의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기재된 경우 동법 제24조가 적용되어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소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Q26 공탁자의 공탁신청 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우 편료를 납입해야 하나요?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소정의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공탁규 칙 제23조제1항, 제2항 참조).

○ 하지만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우편료도 납입하지 않습니다.

Q27 재판기록, 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은 어떤 것인가요?

○ 형사공탁 특례 사유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열람 등이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전산양식 A2200)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한편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범위가 제한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발급받은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2호 서식 참조).

Q28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도 포함되나요?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대법원 사건검색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이 출력 또는 발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확인을 위하여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형사사건의 이송 또는 상소 여부 확인 등).

Q29 형사공탁 회수제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변제공탁절차에서 공탁자는 민법 제48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를 근거법령으로 하며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탁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하게 됩니다.

○ 공탁자는 공탁신청 시에 형사공탁서 하단 "회수제한신고"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으로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형사재판에서 민법 제487조에 기한 형사변제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할 때에는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재형 2000-4 참조).

***** 형사공탁 공고 및 사실통지**

Q30 피해자는 자신 앞으로 공탁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형사공탁이 성립되면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형사공탁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 화면을 조회하면서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 등 유관기

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사실 고지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공탁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Q31 공탁관은 어떤 방식으로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하게 되나요?

○ 형사공탁사실통지서는 공탁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탁사건정보와 공탁당사자 정보가 자동 생성 되는데, 이를 출력한 후 그 통지서 원본을 사건별/피공탁 자별로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을 공탁기록에 편철합니다.

○ 공탁소에서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를 하게 되면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 측에 공탁사실 고지를 할 수 있고, 형사공탁통지를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게 됩니다.

○개정된 공탁규칙과 그에 따른 시스템 개선으로 피공탁자별로 형사공탁사실통 지서에 '문서 확인번호'가 자동 생성되어 출력되고, 형사재판부에서는 발급 담당자가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 하면서 위 '문서확인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공탁관은 위 각 문서의 '문서확인번호'를 대조하여 동일인 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Q32 공탁소에서 검찰로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원본을 송부하기 전에 먼저 팩스 전송을 하나요?

○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이 이뤄질 경우 피해자는 물론 검사도 형사공탁이 이뤄진 사실을 모른 채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은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원본을 송부하기 전에 먼저 팩스로 전송합니다.

Q33 수 개의 공소장을 첨부하여 형사공탁한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이 다를 때 모든 검찰청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해야 하나요?

○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탁자가 제출한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조회 출력물”이나 “공판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통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하여 각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 한편 위 공소제기 된 사건을 관련사건으로 병합심리 하는 경우라면 병합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합니다.

Q34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는 문건으로 접수하나요?

○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는 추후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업무에 참고하도록 공판기록에 편철됩니다. 따라서 기존 형사문건의 대면 또는 우편접수 시의 업무례에 따라 문건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별도의 문건코드로 등록되어있지 않으므로 법원 문건 접수의 방법에 의합니다. [MG101 문건 입력/수정] 화면에서 제출자구분 법원을 선택한 후 제

출자 란에 공탁관을 기재하고 제출자명을 기재합니다(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홍길동' 또는 '공탁관 홍길동'). 문서명에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수기로 입력합니다.

Q35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에게 고지하는 절차는?

○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사건에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 선정되어 있고 선임계 등이 제출되어 있다면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사실을 고지 합니다(공탁규칙 제85조 제2항).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5항), [MG545 동일인 확인 증명서 출력/고지서 출력]에서 고지서 양식을 출력하고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사실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 밖에 피해자가 형사공탁사실의 고지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고지합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4항 후단).

Q36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해야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여야 하는지?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4항 후문의 '이 경우'는 '제1항, 제 2항의 형사공탁사실 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재판부가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을 받았고 피해자가 고지를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합니다(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고지와는 별개입니다).

○ 다만,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고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검찰에서 피공탁자에게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통해 형사공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3항(대 검예규 제1329호)]. 따라서 피해자가 '형사공탁사실 고지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동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힌 경우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하면 됩니다.

Q37 검찰은 피해자 측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탁된 사실을 고지하나요?

○ 검찰의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피공탁자에게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피공탁자의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검예규) 참조].

Q38 공탁소에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재송부할 때 그 통지서에 문서확인번호가 기재되나요?

○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하거나 재송부할 때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의 [별지 제4호 양식]을 사용하는데 그 양식에 문서확인번호가 기재됩니다.

Q39 개정 공탁규칙 부칙에 규정된 소급적용 대상 사건에 대하여 형사공판기록이 이미 검찰청에 인계된 경우 검찰에만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하면 되나요?

○ 개정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는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판결선고 후 기록 송부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담당하게 되고, 다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 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소급적용 대상 사건에 대한 해당 형사공판기록이 이미 검찰청에 인계된 경우 검찰에만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합니다.

Q40 위 질문의 경우 검찰에는 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면 되는지요?

○ 대검찰청·예규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이 경우 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면 됩니다.

Q41 형사공탁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고로 갈음하게 됩니다.
- [WKT157 형사공탁공고등록]에서 공고할 사건을 사건별/피공탁자별로 각각 체시(공고게시 버튼 활성화)하게 됩니다.
- 공고사항은 자동생성되고, 미리보기 기능을 통하여 공고될 문서를 사전에 열람 및 확인 가능합니다.

Q42 형사공탁 공고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자신 앞으로 된 공탁금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경우 먼저 대법원 홈페이지와 전자공탁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홈페이지의 형사공탁공고 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사건인 형사사건번호와 검찰사건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공고문 (PDF 전자문서)은 출력과 저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 그 이외에도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 회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 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민원에 대하여 공탁 사건을 안내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3 전자공탁 홈페이지 외 유관기관에서 형사공탁 공고문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피해자인 피공탁자가 형사공탁의 절차와 형사공탁 공고내용 등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공탁홈페이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형사공탁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
- 대한변호사협회(<https://www.koreanbar.or.kr>)
- 대한법무사협회(<https://kjaar.labl.kr>)

***** 동일인 증명서 발급 및 공탁금 지급절차**

Q44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에 따라 공탁금 출급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개정 전]** 공탁관이 법원 및 검찰로 공탁사실통지 ⇒ 법원, 검찰이 피해자 측에 공탁사실 고지가 이뤄질 수 있고 ⇒ 피해자가 법원·검찰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발급 신청 ⇒ 피공탁자(피해자)가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

○ **[개정 후]** 공탁관이 법원 및 검찰로 공탁사실통지⇒ 법원·검찰이 피해자 측에 공탁사실 고지가 이뤄질 수 있고 ⇒ 법원,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 발급 및 공탁소로 송부 ⇒ 피공탁자(피해자) 공탁금 출급청구

○ 개정 전·후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 비교

	현행	개선
발급 시기	피공탁자의 발급신청 시	형사공탁사실통지 접수 시
발급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수령	방문 신청 불요(증명기관이 발급·송부)
피해자 발급 요청 (발급자언)	×	○
인지대 납부	○	×

○ 공탁금 출급(또는 회수동의서 제출)을 위하여 공탁소를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관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송부하여 공탁소에 도달하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5. 2024. 1. 26. 이후에는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등에 동일인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나요?

○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공탁자(피해자)가 공탁금에 관한 출급 및 회수동의를 신속히 행사할 수 있도록 위하여 공탁규칙이 개정되어 2024. 1. 26 시행되었습니다.

○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공탁자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등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출급청구서와 나머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도달하였는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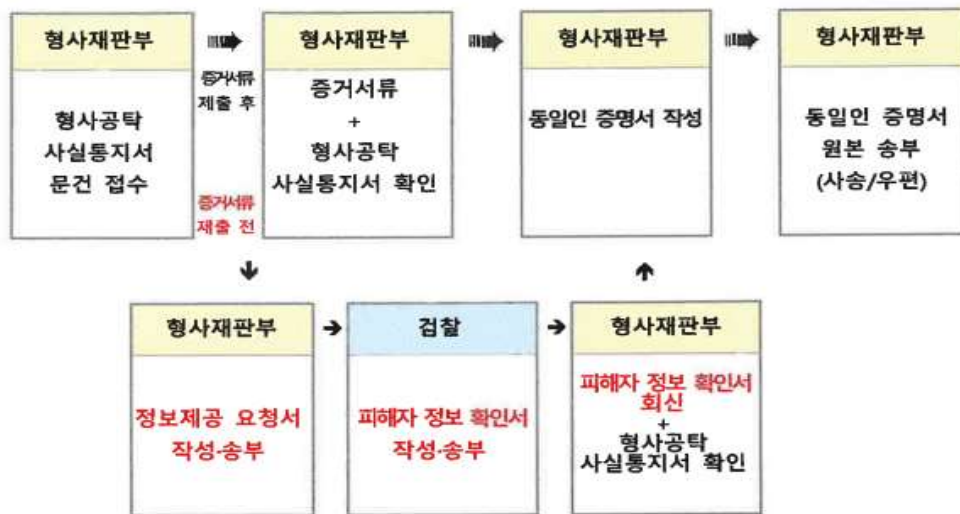
Q46 개정 공탁규칙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개관

○ 일반사건('일반사건'이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이 적용되어 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신원관리카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함)를 제외한 모든 사건을 의미하며 일반사건에 있어서는 증거기록 제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원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은 법원이, 가명사건(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

재·관리하는 경우를 말 함)과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에 인계된 사건은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해야 합니다(검찰의 경우 법원과 달리 동일인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피해자 동의 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일반사건이지만 증거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정보를 법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검찰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 송부합니다.

○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는 발급기관(법원, 검찰)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발급이 이뤄지고, 발급이 지연될 경우 피공탁자(피해자)는 각 발급기관에 전화 등 간이한 방식으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공탁규칙에 따른 구체적인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법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기관(법원·검찰)은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한 후 공탁소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습니다.

Q47 [검찰] 동일인 증명서는 검사 명의로 발급되나요?

○ 형사공탁 관련 업무는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해당 사건의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합니다 (대검예규 제2조 참조). 따라서 검찰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는 검사 명의로 발급됩니다.

Q48 개정 공탁규칙의 시행[2024. 1. 26] 전에 발급받은 동일인 증명서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나요?

○ 개정 전 규칙과 예규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또는 검찰에서 적법하게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발급기관에서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하여 공탁관이 동일인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공탁금 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탁금 출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탁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Q49 [시스템]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

- WCR545 화면에서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 및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접수 현황을 확인한 뒤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종전과 달리 피공탁자의 '연락처'와 형사 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확인번호'를 추가로 직접 입력해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공탁규칙 및 예규에 따르면 공탁소에서 송부한 형사공탁사실통지서가 접수되면 법원 또는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공탁소에 방문하시기 전에 공탁소나 법원, 검찰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 및 공탁소 송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0 동일인 증명서에 문서확인번호를 기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탁소에서 피공탁자별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출력하면 문서확인번호가 자동 생성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 또는 검찰은 동일인 증명서에 형사공탁 사실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확인번호를 다시 기재하여 공탁소로 송부하 공탁관은 공탁서 등 공탁기록과 함께 동일인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확인번호와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있는 문서확인번호를 대조함으로써 피공탁 자(피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1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확인 절차는?

- 일반사건의 경우,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공탁자의 정보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재판기록을 찾아 대조하고,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성명 [예시: 김본명, 김○○, 홍길동(가명)]으로 지칭되는 자가 맞는지 공소장 등이나 조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인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에 대한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일반사건에서 검찰이 아직 법원에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기록만으로는 피공탁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장 명의로 검찰에 '피공탁자 정보제공 요구서'를 송부하고, 검찰로부터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가명사건의 경우 또는 사건이 확정되어 재판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경우에는 재판기록을 통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형사재판부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반사건의 경우 사건이 확정되기 전 형사공탁사실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법원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검찰에 재판기록을 인계하기 전에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Q52 해당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은 ① 일반사건인지 가명사건인지 여부, ② 해당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 한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검찰에 기록이 인계되기 전 단계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어느 기관이 발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형사공탁사실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재판기록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법원 발급	검찰 발급
판결 확정 전 일반사건 (증거기록 제출 여부 불문)	가명사건
	일반사건 중 판결 확정 이후 재판기록 일체가 검찰에 인계된 경우

Q53 형사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원의 심급이 달라도 상관 없나요?

-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여야 하므로(개정 공탁규칙 제86 조 제1항), 형사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원의 심급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의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상소되어 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거나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이 검찰에 인계되기 전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예규 제11조제2항 참조) 증명서 발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 만약 하급심에서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누락하는 등의 사정으로 상급심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급심에서는 일반적인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확인번호는 정확하게 기재하여 공탁소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급심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의 분실 등으로 상급심에 증명서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5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피해자 인적 사항이 관리되는 사건의 경우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재판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은 검찰이 담당합니다.
- 담당검사는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데,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대검예규상 피해자에게 동일인 증명서 발급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 업무는 해당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는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이 처리하게 됩니다.

Q55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법원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는?

- 피공탁자(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형사재판부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와 당해

형사사건의 피해자 동일성 여부가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피공탁자(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습니다.

○ 통상 형사공탁사실접수통지가 있으면 법원 또는 검찰이 지체 없이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송부할 것이나, 어떠한 이유에서 발급·송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피공탁자(피해자)가 서면(재판양식 B4971)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면 됩니다.

○ 서면(동일인 증명서 발급 요청서)이 아닌 전화로 재판부에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송부한 후 결과 보고서(재판양식 B4974)를 작성하여 공판기록에 편철하면 됩니다.

Q56 피공탁자가 공탁소를 방문했는데, 동일인 증명서가 법원·검찰로부터 아직 송부 전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발급기관인 법원 또는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6조제5항 등 참조). 이 경우 법원 또는 검찰은 피해자 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검찰이 증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법원이 검찰에 피해자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 정보 제공이 지연될 경우에도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검찰에 전화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6조 제5항 및 예규 제13조제1항 참조).

Q57 법원에 증거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검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 하였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요?

○ 검찰에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증거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검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이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제5항 참조).

Q58 피공탁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받은 형사재판부나 검찰은 증거 서류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게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피공탁자에게 증명서 발급·송부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피공탁자는 관할공탁소 또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나 검찰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송부 여부에 관하여 먼저 확인한 후 공탁소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당 형사사건이 가명사건에 해당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기록 일체가 검찰에 인계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형사공탁사실을 통지를 받은 검찰이나 1심 판결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전화 등으로 문의하여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송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 경우 동일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되기 전이라면 증명서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발급기관은 피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게 됩니다.

Q59 개정된 공탁규칙의 부칙에 따르면 개선된 증명서 발급절차가 소급적용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법원행정처에서는 형사공탁 시행일인 2022. 12. 9.부터 개정 공탁규칙 제86조의 시행일 전일인 2024. 1. 25.까지 접수된 형사공탁 사건 중 공탁금이 출급되지 않은 공탁사건의 목록을 해당 공탁소에 송부합니다. 해당 공탁소에서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 공탁사실통지서를 재송부합니다. 이를 재송부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각 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해당 공탁소에 송부하게 됩니다.

○공탁소에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재송부하기 전에 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위하여 공탁소에 방문하는 등 출급을 요청한 경우 공탁관은 즉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출력하셔서 발급기관에 재송부하시기 바랍니다.

Q60 공탁소에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재송부할 때 재송부 사실이 그 통지서에 표시되나요?

○ 개정 공탁규칙 제89조에 따라 제정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 규)'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탁소에서 공탁사실통지서를 법원 또는 검찰에 재송부할 때 그 공탁사실통지서의 여백에 아래와 같이 재송부 취지(예규별표 4)를 기재하여 송부합니다.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재송부	
대법원 행정예규 0000호 부칙에 의함	
○○지방법원(○○지원) 공탁관 ○ ○ ○	인

Q61 피공탁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피공탁자가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분증명서로 피공탁자임을 확인한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가 요구됩니다(예규 제20조 참조).

○ 형사공탁은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이 비실명 처리되어 공탁이 이뤄지고,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피공탁자가 제출할 수 있는 서면이기 때문에 회수동의서를 적법하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증명서에 의하여 피공탁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일인 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발급기관인 법원 또는 검찰에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13조 참조).

Q62 피공탁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명의 그대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송부 하고, 그 후 공탁소에서 상속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지요?

○ 동일인증명서의 발급은 법원 또는 검찰이 발급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을 알 수 없으므로 법원 또는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명의를 그대로 기재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관할 공탁소에 송부하고, 상속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관계 서류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

면 충분하고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형사공탁 후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다. 공탁관은 출급 청구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속관계서류의 제출을 보청권고 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02307-2호).

Q63 강도살인사건 등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 경우 또는 상해죄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탁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명서의 피공탁자는 사망한 피해자가 기재되나요?

○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공탁이 인정된다(공탁법 제5조의2 참조)는 점과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상속관계는 공탁관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를 대상으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Q64 공탁관은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 “삼단바코 드(위변조방지바코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형사사법포털'의 진위확인 코너를 이용하여 동일인 증명서 하단의 위변조 방지바코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원본 문서의 진위 여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앱 설치(구글플레이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하단 우측)전체 메뉴 음성변환/진위확인 코너 선택 동일인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 스캔 원본 문서 확인

02
수용공탁

01
절 총설

①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 사업인정의 고시⁵⁾, ㉡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⁶⁾, ㉢ 협의⁷⁾, ㉣ 재결⁸⁾로 이루어진다.

②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야만 그 수용의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만약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그 결과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사업시행자

되므로, 귀책사유 없는 사업시행자의 보호를 위해 토지보상법은 일정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등).

토지수용법에 내해지까지 미진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5.9.10, 2015나216273 참조).

⑦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債權)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인 수용보상금채권이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債權)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각 호의 공탁 사유가 있다면 유가증권공탁의 절차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6호).

債券 ... 으로 수정

2) 상대적 불확지공탁

-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1.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피공탁자: 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다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는 제외
 2.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한 등기기록이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피공탁자: 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

3.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공유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공시된 공유자 전부)

4.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상속인들 전부)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다.

1.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2.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공매공고(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 포함) 등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3) 절대적 불확지공탁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1. 수용대상토지등이 미등기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피공탁자: 소유자 불명)

가.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나.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가 없는 경우

다. 대장상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2. 수용대상토지등이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소유자 불명)

3.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가. 상속인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상금 전부(피공탁자: 망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병기]의 상속인)

나. 상속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알 수 없는 상속인에 대한 보상금 부분(피공탁자: 망 ○○○의 상속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병기] 외 상속인)

*** 158 페이지에 아래부분 추가

(5)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①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에는 공탁근거법령을 토지 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로 하고, 피공탁자는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②	만약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탁근거법령을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로 하고, 피공탁자는 '가처분채무자(부동산소유자)'로 하는 확정공탁을 하되, 위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공탁선례 제201101-2호).
2)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 부분에 아래내용 추가

(6)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확정.....으로 수정

↓

(4) 피공탁자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

①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수환점을 받았으나 수용의 개시일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도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록 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도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받아야 출급청구할 수 있고, 피공탁자가 의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양도하지 않으면 “공탁물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 없다.....로 수정.....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실제 1인의 소유인 토지가 주택조합의 구성으로 조합원 50명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2) 일부 공탁의 경우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일반 민법상의 변제공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이 원칙이다.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에 일부 공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액에 불복하여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만을 공탁하는 경우)이 없는 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공탁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제2-182호). ②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 전액의 공탁을 의미하므	
---	--

이 부분에 아래내용 추가

...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서에 기재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의한 압류채권자는 위 채권가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을 추심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351호). ④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해야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는 없다.	3.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공탁사유신고 가. 의의 이 부분 삭제하고 그 대신 아래내용 공탁선례 추가
---	--

□ 관련선례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23. 11. 29. [공탁선례 제202311호, 시행]

1)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가)압류의 경합 없이 단일의 가압류로도 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이하 '가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 한다)가 경합하는 경우에 가압류의 존재만으로 공탁

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이하 '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사인(사인)인 제3채무자는 위 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법률상 차이점, 우선순위 등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을 통하여 제3채무자를 면책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후의 배당절차에 체납처분권자가 참여하는 문제도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선후를 불문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 허용되는 이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징수)과 이종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제3채무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 대한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공탁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한편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하다는 점, 가압류 집행공탁은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관으로 바뀌게 되는 변제공탁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전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상 부담은 새로운 제3채무자(공탁관)에 대한 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민사집행법 제297조에 따라 그 가압류의 효력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221 페이지에 다음 내용의 공탁선례 추가

ART - 02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이때 공탁금 중 丙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50만 원은 배당재단이 되겠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나머지 50만 원은 변제공탁의 성격을 갖고 乙이 피공탁자로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乙이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50만 원)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면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는 앞서 제3채무자 甲의 사유신고에 의하여 개시된 것과는 별개의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03 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1. 의의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변제기 도래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자신의 채무를 선이행하거나 동시이행을 하여야만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제3채무자는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에 아래선례 추가

□ **관련선례** :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채권자 대위판결이 확정된 후 피대위권리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순차적으로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또는 변제수령권능에 불과하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는 공탁근거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으로 기재하여 압류결정문 사본을 모두 첨부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 압류사실을 모두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제3채무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장 먼저 송달받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하여야 할 것이다.

(2024. 6. 10. 사법등기심의관 - 3003 질의회답)

*** 133 페이지 아래 부분에 아래 선례 추가

⑥ 그러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할 질권, 저당권, 전세권의 표시는 반대급부 조건이 아니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이의유보부 출급(이의유보 의사표시)

(1) 의의

① 공탁물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 시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하남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이와 같이 공탁원인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붙여 공탁물을 출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이 부분에 아래선례 추가

□ **관련선례** :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하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1. 임차인의 건물인도 의무 및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내용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한 것은 유효한 공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인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공탁자의 서면(공탁자 작성의 건물인도확인서, 반대급부채권 포기·면제서 등),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공탁자의 강제집행신청으로 건물의 인도 사실이 기재된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등) 등이 해당한다(공탁법 제10조).
3. 이외에도, 관리비 정산내역서, 피공탁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통·반장의 인도(불거주) 확인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인도(불거주)확인서, 이사 확인서, 공실인 인도 대상 목적물(호실)과 촬영 날짜가 표시된 현장사진, 공탁자에게 퇴거사실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린 문자메시지 또는 내용증명우편, 현관문 열쇠를 물품 공탁한 물품 공탁서 등을 제출하여 반대급부인 건물의 인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첨부된 서면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는 해당 공탁관이 판단할 사람이다.(2024. 7. 12. 사법등기심의관-1698 질의회답)

02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등부분을 모두 아래 내용으로 수정

02.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정 2024. 6. 27. [행정예규 제1400호, 시행 2024. 8. 1.]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혼합공탁 신청과 그 공탁금의 출급·회수 등에 관한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2. “채권자 불확지”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동일 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혼합해소문서”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이하 “집행채권자”라 한다)가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관할공탁소)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제공탁사유가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탁자들 중 어느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제2장 공탁절차

제4조 (공탁사유)

- ① 제3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1. 선행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2.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되거나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3.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경우
- ②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 ③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다수의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고, 다수의

지분권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탁서 기재 방식)

- ① 피공탁자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되, 집행채권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1.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
 - 2. 제4조제2항의 경우 권리자인지 여부에 다름이 있는 사람 전부
 - 3. 제4조제3항의 경우 지분권자 전부
- ② 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을 기재한다.
- ③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나 압류명령 및 그 송달일자, 채권양도와 그 통지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첨부서면 등)

- 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의 「공탁규칙」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공탁자는 제4조의 공탁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채권양도서류, (가)압류 결정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별지의 공탁사실통지서와 제1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 ①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관은 제8조에 따른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혼합해소문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음을 이유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합공탁이 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는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8조 (혼합해소문서)

-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혼합해소문서가 될 수 있다.
 - 1.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정본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정본
 - 2.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② 제1항의 혼합해소문서는 피공탁자,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문서이어야 한다.

③ (가)압류채권자·채무자 등은 제1항의 혼합해소문서를 공탁사유신고가 이루어진 집행법원 및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탁금 출급)

①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 정본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이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 정본 포함)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진 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집행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공탁금의 회수)

① 공탁자는 공탁금 중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혼합공탁의 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공탁규칙」의 준용)

①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가 제9조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3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가 제10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에 대해서는 「공탁규칙」 제3장을 준용한다.

9.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 안내문 발송 내용 및 서식 등모두 아래 내용으로 교체

9.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 안내문 발송 내용.

가. 공탁법 제 9조 ④항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나. 공탁규칙 제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① 법원행정처장은「공탁법」제9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전기통신사업자 등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의 성명(상호, 명칭)
2.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의 주소(본점, 주사무소)
4.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의 전화번호

④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번호,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안내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4. 8. 6. [행정예규 제1403호, 시행 2024. 8. 6.]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담당)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하며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제3조 (안내 방법)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우편발송
2. 앱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전자적 안내"라 한다)

제4조 (우편안내 대상)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변제공탁사건의 피공탁자
2. 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4.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제6조 (우편안내 절차)

①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 발송 대상자에 대하여 주소 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조회하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제6조의2 (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 ①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다만,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 ③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처리한다.
- ④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제7조 (전자적 안내 대상)

- ①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부터 만 8년 전까지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제4조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 ② 공탁일로부터 만 14년이 경과한 사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전자적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전자적 안내 절차)

- ① 제7조 각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다.
- ② 제1항의 대상사건 중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행정자치부 등 주민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제1항의 절차를 진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회신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안내를 한다.

1.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성명
2. 관할 공탁소, 공탁종류, 공탁사건번호
3. 공탁금액(잔액)
4. 제4조 각 호 공탁유형별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 절차
5. 그 밖에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추가적 안내 대상)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 사건 등 관할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7조 이외의 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우편안내 또는 전자적 안내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1.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건수 및 도달 건수
2.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후 공탁금을 출급, 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
3. 직전 연도의 전자적 안내 전송 건수 및 공탁금을 출급, 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
4. 그 밖에 안내문 발송 및 전송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유의사항)

안내문(전자적 안내 포함)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